

소송업무규정

제정 2009.10. 1 규정 제 10호
개정 2013. 9.27 규정 제 99호
개정 2017.12. 1 규정 제169호
개정 2018. 5.15 규정 제177호
개정 2018.12.31 규정 제190호
개정 2020. 7. 2 규정 제224호
개정 2020.11.23 규정 제234호
개정 2021.12. 9 규정 제25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한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비송사건 등과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한 직무상의 행위로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명도소송은 제외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공사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7조에 따라 선임된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 허가를 받은 직원을 말한다.
3. “소송발생부서장”이란 소송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지역본부장 및 사업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주무부서장”이란 소송발생부서장 중 본사의 부서장을 말한다.

5. “소송총괄부서장”이란 소송의 제기, 응소 등 공사 소송 전반에 대하여 총괄하는 본사 소송부서장을 말한다.

6. “소송비용”이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종결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담하는 소송수행 중 소요된 비용(착수금, 승소보수금,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송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소송업무 수행절차

제4조(소송수행) ① 소송은 소송총괄부서장이 수행하며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송(이하 “소송발생부서 위임소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송발생부서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되, 소액사건·단독사건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7조에 따라 선임된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 허가를 받은 직원이 수행할 수 있다.

③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의 난이도,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식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임한다. <개정 2021. 12. 9.>

④ 경쟁방식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과반수가 참석하는 소송대리인 선임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설 2021. 12. 9.>

1. 소송총괄부서의 장
2. 소송총괄부서의 담당부장
3. 소송주무부서의 담당부장
4. 소송발생부서의 담당부장
5. 법학교수 또는 변호사 1인

⑤ 소송대리인 선임 평가위원회는 응모자가 제출한 제안서(별지 제1호의5서식) 등을 별표 3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를 결정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소송총괄부서장이 정한다. <신설 2021. 12. 9.>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9.>

1.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법무부 등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불변기간 도과 임박,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긴급한 경우
3. 이전 심급 또는 관련사건 수임 등으로 특정 변호사 선임이 효율적인 경우
4. 착수금이 5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
5. 그 밖에 사건의 성격과 내용상 전문성을 요하거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⑦ 제6항의 경우 공사의 법률고문 또는 자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해당사건에 관한 전문지식, 소송수행능력, 사무소 소재지, 사건의 성격과 내용 등을 감안하여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9.>

⑧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호의2

서식(보상금증액소송 제1심에 한한다)에 따른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다만, 소송위임계약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3., 2021. 12. 9.>

제5조(제소의뢰) ① 주무부서장은 소관업무 중 소송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소방침(사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서장은 제소방침을 정하기 전에 미리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소송발생부서 위임소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② 지역본부장(사업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소송발생부서 위임소송 외의 소송에 대하여 제소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서장에게 제소의뢰 요청을 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주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소방침을 정한 후에 제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주무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소 의뢰할 경우 제소기한(민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등 완성) 30일 전에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6조(응소) ① 소송에 대한 응소방침은 소송총괄부서장 또는 소송발생부서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한 직무상의 행위로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발생부서장은 사건경위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응소 등 대응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송발생부서 위임소송에 해당되는 경우 소송발생부서장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③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 중 소송총괄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발생부서장은 제5조를 준용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응소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7조(소송발생부서 위임소송) ① 다음 각 호의 소송은 소송발생부서장이 수행한다. 다만, 소송총괄부서장이 소송총괄부서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1.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 등 등기와 관련된 소송
2.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전부금, 추심금, 양수금 청구소송
3. 민사소송 중 소송물가액이 3억원 이하인 소송 <개정 2017. 12. 1.>
4.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 포함),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 등 이주·생활대책 관련 소송
5. 토지 또는 건물의 인도·철거 등과 관련한 소송
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확인의 소송
7.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한 직무상의 행위로 당사자가 된 경미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8. 하자소송 종결로 인한 후속조치 관련 소송 <신설 2017. 12. 1.>
9. 긴박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송발생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소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송
 - 가. 확정판결 등으로 주요 법리 및 사실관계가 정형화된 사건
 - 나. 소송물가액이 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나 청구원인등이 단순·명료한 사건
 - 다. 제소기한 임박 등으로 소송총괄부서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건

<2018.12. 31. 개정>

② 소송발생부서장은 위임받은 소송업무를 총괄하며 해당소송 관련 부서장은 소송발생부서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018.12. 31. 개정>

③ 소송발생부서장은 소송발생부서 위임소송의 제소, 응소, 심급별 소송 결과 및 소송종결 사항을 지체없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8조(소송고지 및 보전조치) 소송총괄부서장 및 소송발생부서장은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고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9조(상소의 제기 등) ① 법원의 판결에 상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호사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상소의 이익이 경미한 경우

③ 소의 취하,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송의 탈퇴, 상소의 포기 등 중요한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소송물가액이 30억원 이상인 때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경영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소송이 아닌 경우로서 소송발생부서, 소송대리인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제10조(소송협의체 구성)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사건의 주요 쟁점사항

등의 검토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장, 소송총괄부서 부장, 주무부서장 및 주무부서 부장, 지역본부(사업본부 포함) 담당 처장 및 부장, 사내변호사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필요로 하는 자로 소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소송발생부서 위임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발생 부서장이 해당 소송 관련 부서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소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11. 23.>

② 하자소송의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이 소송사건의 전문성, 난이도, 중대성을 감안하여 기술기준, 주택설계 및 시공품질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소송 협의체 구성원으로 지정한 때에는 해당부서장은 지체없이 그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제3장 소송비용

제11조 (소송물가액의 산정) 변호사보수의 산정을 위한 소송물가액은 대법원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소송의 내용이나 성질을 고려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제12조 (변호사보수 지급방법)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승소보수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부가가치세는 따로 지급한다. <개정 2017. 12. 1.>

제13조 (착수금의 산정) ① 변호사 소송위임에 대한 착수금은 소송물가액을 기초로 별표 1의 착수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5천만원을 초과하여 산출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소송물가액이 1천억원 초과하는 조세소송으로서 1억원을 초과하여 산출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1.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송사건 및 비송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그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호에 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7. 12. 1.>

1. 비재산권상의 사건 및 재산권상의 청구로서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
2. 소송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물가액을 기초로 산출되는 착수금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3.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외한 행정사건
4.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에 관한 제소사건
5.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인세 등에 관한 제소사건
6. 형사사건
7. 다수의 지장물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에 관한 사건
8. 헌법소원사건
9. 삭제 <2020. 11. 23.>
10. 공동주택 하자소송 <신설 2018.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5천만원(소송물가액이 1천억원 초과하는 조세소송 및 공동주택 하자소송은 1억원)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④ 소송 진행 중 소송물가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정도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재산정한 착수금 범위에서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12. 1.>

⑤ 상급심의 착수금 기준도 원심 착수금의 산정기준과 같다. 다만, 소송물

가액이 증감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

⑥ 같은 목적물에 대한 재소송 또는 재심사건을 같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원심 착수금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2. 1.>

⑦ 상고심 사건에 있어 공사 상고부분에 대한 파기환송이 있는 경우에는 환송심 착수금으로 상고심 착수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환송심 착수 시 소송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⑧ 가압류 및 가처분사건의 착수금은 본안소송 착수금의 2분의 1 이하로 하며 본안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그 보수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중지가처분 등 본안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본안소송과 동일하게 착수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⑨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 신청사건, 담보취소 신청사건 및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은 착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

⑩ 강제집행 및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착수금은 본안소송 착수금의 4분의 1 이하로 하되 그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

제13조의2 (승소보수금의 산정) ① 본안소송의 승소보수금은 전부 승소의 경우에 착수금의 1배를 지급하며,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그 승소의 정도, 소송수행의 난이도, 소송결과의 공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적정수준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경영상의 중요한 소송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 승소보수금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

② 상고심 사건에 있어 공사 상고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파기환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승소로 본다. <개정 2017. 12. 1.>

③ 가압류 및 가처분사건은 변론이나 심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한정하여

승소보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④ 가압류 및 가처분의 해제신청사건, 담보취소 신청사건 및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 강제집행 및 강제집행정지사건의 승소보수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승소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사건 변론의 경과, 변론의 성숙도, 변론기간 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경우 착수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가 원고인 경우 피고의 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의 판결(무변론 판결 포함)이 있는 경우

2. 소의 취하(쌍불취하를 포함한다),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본안 심리전 각하판결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3. 승소율이 5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소가능성은 낮으나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경영상 법원의 판단(항소, 상고 포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협의하여, 소송물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변호사보수(착수금과 승소보수금의 합계) 중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의 1/5 이내로 지급하고, 승소보수금은 변호사보수에서 착수금을 뺀 금액 이내에서 승소의 정도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20. 11. 23.>

⑦ 보상금증액소송(제1심에 한한다)의 경우 별표2에 따라 승소보수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 11. 23.>

제14조(위임사건 처리비용 등) ① 인지대, 송달료, 출장여비 등 소송사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변호사보수와는 따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출장여비는 공사의 1급 직원의 여비에 준하여 산출한다.

③ 변호사보수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소송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총괄부서장 또는 소송발생부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18. 12. 31.>

제15조(법률자문 보수의 산정) ①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법률자문을 한 경우 그 보수는 1건당 300만원 이내에서 자문내용의 난이도, 검토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송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 12.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및 서면 작성에 장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변호사 외에 해당 전문분야 교수, 관련기관 등에 법률자문을 할 수 있다.

제4장 소송결과에 따른 조치

제16조(소송결과 통보 등)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주무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에게 해당 소송의 진행상황을 통보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판결 후 그 판결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무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에게 소송수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주무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은 소송결과에 대한 상소 등의 의견제시, 판결내용에 따른 채무의 이행, 채권의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소송비용 등의 회수 및 지급) ① 소송수행 결과 공사가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비용 회수의 실익을 판단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송달된 후 그 정본을 첨부하여 주무부서장이나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주무부서장이나 지역본부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납부 최고 등을 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소요기간이나 경비 등에 비추어 회수할 금액이 경미한 경우
2. 상대방이 지급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그 밖에 소송비용의 회수가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공사의 패소확정으로 소송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그 확정결정문이 공사로 송달되면 소송총괄부서장은 그 정본을 첨부 하여 주무부서장이나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주무부서장이나 지역본부장은 소송상대방 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청구가 들어오면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⑤ 소송총괄부서장의 소송수행결과 소송종결 등으로 담보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송총괄부서장은 지체없이 법원에 담보취소결정신청을 하고,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⑥ 소송발생부서 위임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발생부서장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및 담보취소결정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2. 31.>

제18조(강제집행 등) ① 소송발생부서장은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그 판결의 내용에 따른 채권의 행사, 채무의 이행 및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압류·가처분된 공사예금계좌

및 부동산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소송총괄부서장이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주무부서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다.

③ 강제집행의 경우로서 채무자의 행방불명, 무자력 등으로 그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가 확인되거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시 강제집행을 추진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장래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소송대리인 및 보조자

제19조(법률고문 등) ① 공사는 업무 전반에 관하여 법률상의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며 지역본부에는 필요에 따라 자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사장이 위촉하며, 자문변호사는 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③ 공사는 법률적인 자문에 관하여 사내변호사를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고문 등(법률고문 및 자문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3.>

제19조의2(법률고문 등의 운영 기준) ① 공사는 법률고문 등을 위촉·운영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률고문은 공모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응모자 부족, 결원의 충원 등 공모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

③ 법률고문의 위촉에 따른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 후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재위촉에 따른 연임은 4회에 한한다. <신설 2020. 11. 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의 추가 위촉이 필요할 경우 다른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3.>

⑤ 법률고문 등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자 중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사실이 없는 자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1. 23.>

⑥ 법률고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3.>

제19조의3(법률고문 추천심사위원회) ① 공모방식으로 법률고문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법률고문 추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법률고문 지원서(별지 제1호의6서식) 등 공사에서 정한 서류를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소송총괄부서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선정한다.

1. 소송총괄부장

2. 공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법무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차장급 이상 직원

3. 법학교수 또는 판사·검사·변호사로서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송총괄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중전 제19조의3은 제19조4로 이동 <2021. 12. 9.>]

제19조의4(법률고문 등의 의무) ① 소송 또는 자문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률고문 등은 공사와의 이해충돌이 있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해당 사건을 수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률고문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사는 법률고문 등의 해촉, 소송위임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사건수행과 관련된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

2.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타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제19조의3에서 이동, 중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21. 12. 9.>]

제19조의5(퇴직변호사의 수임제한) 공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퇴직 후 1년간 공사의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9>

[제19조의4에서 이동, 중전 제19조의5는 제19조의6으로 이동 <2021. 12. 9.>]

제19조의6(소송위임의 제한) ① 공사가 소송위임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공사에서 발생한 신규 소송(동일 사건에 대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총건수의 2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소수점이하 버림)

2. 전년도 공사가 지급한 총 착수금의 2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은 소송총괄부서와 지역본부별로 각각 산정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전문성 및 수행경력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6은 제19조의7로 이동 <2021. 12. 9.>]

제19조의7(법률고문 등의 해촉) ① 공사는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고문 등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소송 또는 자문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소송 또는 자문 수행 중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5. 소송수행경력 및 징계사실 등 위촉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6. 제19조의8에 따른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개정 2021. 12. 9.>

7.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7은 제19조의8로 이동 <2021. 12. 9.>]

제19조의8(법률고문 등의 평가 및 재위촉 제한) ① 공사는 법률고문 등이 수행한 자문 또는 소송에 대하여 충실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저조한 법률고문 등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소송총괄부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1. 23]

[제1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8은 제19조의9로 이동 <2021. 12. 9.>]

제19조의9(정보의 공개) 공사는 소송 및 법률자문현황, 소송대리인 및 법률고문 현황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 및 정부 경영공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8에서 이동 <2021. 12. 9.>]

제20조(소송대리인의 의무) ① 소송대리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그 수임 사무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송대리인은 업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소송수행 보조자) 소송발생부서의 담당 부장 및 그 직원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 사건의 소송수행 보조자(이하 “보조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17. 12. 1.>

제22조(보조자의 직무) ① 보조자는 소송총괄부서장 또는 소송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작성 및 제출
2. 변론기일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에의 출석 및 입회
3. 하자소송의 경우 하자감정착수회의 참석 및 하자조사 입회 <신설 2017. 12. 1.>
4. 사내전산망 소송관리부문에 수행 중인 소송자료의 입력 및 관리 <개정 2017. 12. 1.>
5.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2. 1.>

② 보조자가 소송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송총괄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6장 소송심의위원회 <신설 2018. 12. 31.>

제23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송총괄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9.>

1. 제소 및 응소 방침 등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전사적인 소송 및 분쟁 현안으로서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사항
3. 그 밖의 소송관련 업무 중 위원장이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송총괄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주무부서장
2. 주무부서 담당부장
3. 지역본부(사업본부 포함) 담당 처장(사업단장 포함)
4. 소송총괄부서 법무지원부장
5. 소송총괄부서 송무1부장
6. 소송총괄부서 송무2부장
7. 사내변호사
8. 그 밖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관련부서 부장급 이상의 직원
9. 심의안건이 중대하거나 심의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3인 이내의 외부 위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

하는 소송총괄부서의 송무담당 차장이 된다.

제2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송총괄부서 송무1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심의요청)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서장은 관련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안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각 회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된 내용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심의의결서에 기입한 후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28조(자료요청 및 조사)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관계자의 의견청취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29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주무부서장은 그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은 주무부서장에게 경영심의회 등 중요사항 심의기구의 심의 절차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2021. 12. 9.>

제31조(소송협의체의 활용)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0조에 따른 소송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협의체를 대표하며,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 경우 협의체는 제10조제1항의 자 중에서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9.>

[본조신설 2020. 11. 23.]

제7장 보칙 <신설 2021. 12. 9.>

제32조(수당 지급) 이 규정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9.]

부칙<2009.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은 공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된 사건의 변호사 보수는 해당 소송위임계약에 따르며, 종전의 사건 중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상급심의 소송위임계약은 이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 칙<2013. 9. 27.>

이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 사규에 따른다.

부 칙<2018. 5.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 사규에 따른다.

부 칙<2020. 7.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 사규에 따른다.

부 칙<2020.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 사규에 따른다.

부 칙<2021. 12. 9.>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3조 관련) <개정 2018. 5. 15., 2018. 12. 31., 2020. 11. 23.>

착수금 산정기준

소송물 가액	산정 기준	지급 기준액
1,000만원 이하	$[160\text{만원}] \times 1/2$	80만원
1,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6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1,000\text{만원}) \times 7/100] \times 1/2$	80만원 ~ 220만원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4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0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2$	220만원 ~ 370만원
1억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74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1\text{억원}) \times 4/100] \times 1/2$	370만원 ~ 470만원
15,000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94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1\text{억}5\text{천만원}) \times 2/100] \times 1/2$	470만원 ~ 520만원
2억원초과 ~ 5억원 이하	$[1,04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2\text{억원}) \times 1/100] \times 1/2$	520만원 ~ 670만원
5억원 초과	$[1,34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text{억원}) \times 0.5/100] \times 1/2$	670만원 ~
1천억원 초과 조세소송	$5\text{천만원} + [(\text{소송물가액} - 1\text{천억원}) \times 0.5/100 \times 1/10]$	5천만원 ~

다만, 보상금증액소송 제1심의 소송물 가액은 최종 재결금액의 10%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최초 청구금액이 재결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2. 보상금 감액소송

[별표 2] (제13조 관련) <신설 2020. 11. 23.>

보상금 증액소송 제1심 승소보수금 지급기준

- 증액률(판결금액/재결금액)이 3.5%이하인 경우를 승소로 보고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화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증액률 (판결금액/재결금액)	지급금액	계산식
0%	착수금의 1배	착수금의 1배
1% 이하	~ 착수금의 6/7	$[1-(\text{증액률}/7)] \times \text{착수금}$
1% 초과 ~ 2% 이하	~ 착수금의 5/7	$[1-(\text{증액률}/7)] \times \text{착수금}$
2% 초과 ~ 3% 이하	~ 착수금의 4/7	$[1-(\text{증액률}/7)] \times \text{착수금}$
3% 초과 ~ 3.5% 이하	~ 착수금의 1/2	$[1-(\text{증액률}/7)] \times \text{착수금}$

수임제안서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표

법무법인명(변호사)	
소송건명	

평가부문	구분	배점	평가 내용
소 송 수 행 능 력	소송내용 파악의 적정성	25점	· 소송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 유사사례(판례등) 확인 등 사건내용 검토가 충실한지 여부 · 쟁점사항 중 누락항목이 없는지 여부 등
	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	30점	· 변론 진행계획, 증거자료 확보방법 등 소송 수행계획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 승소가능성 · 담당변호사 이외에 법인(법률사무소)의 전문팀 (전문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담당변호사 구성의 적정성	25점	· 사건 담당변호사(파트너 변호사 및 실무 변호사)가 유사소송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 담당변호사의 경력 등으로 보아 사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소송비용의 적정성		20점	· 제안된 금액이 의뢰하는 소송을 수행하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 (금액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지)

평가 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	------	------	------

[별지 제1호서식] (제4조 관련) <개정 2020. 7. 2., 2020. 11. 23.>

소 송 위 임 계 약 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의뢰인"이라 함)와 변호사 (이하 "소송대리인"이라 함)는 원고 피고 간의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위 사건의 제 심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2조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사무 처리의 착수금으로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3조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사무 처리상 필요한 인지대, 예납금(송달료, 법원의 납부명령에 따른 검증료, 감정료), 기록등사료, 출장여비 등을 지급한다.
(인지대, 예납금 환급계좌: ○○은행, 계좌번호 기재,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조 위임사무가 전부 승소일 때에는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승소보수금을 지급하며 일부 승소일 때 및 기타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소송업무규정을 따른다.

제5조 소송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환송심에 대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계약으로 갈음하며 환송심에 대한 착수금은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6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항 중 소의 취하, 반소의 제기,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상소권의 포기 등 중요한 소송행위를 할 때는 미리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소송대리인"은 소송수행 목적으로 "의뢰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유출방지 등 보호의무가 있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반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대리인"이 이 계약서 제8조 및 제9조,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와 붙임 서식의 청렴서약서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의뢰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대리인"은 소송중인 법원에 사임계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건이 승소(일부승소 포함)로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야 할 경우 즉시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 결정정본을 "의뢰인"에게 송부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뢰인"과 "소송대리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의뢰인"과 "소송대리인"은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의뢰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인)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주 소

(인)

붙임 서식 : 청렴서약서 1부(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제4조 관련) <신설 2020. 11. 23.>

소 송 위 임 계 약 서 (보상금증액소송 제1심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의뢰인"이라 함)와 변호사 (이하 "소송대리인"이라 함)는 원고 피고 간의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위 사건의 제 심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2조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사무 처리의 착수금으로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이 경우 착수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물 가액은 최종 재결금액의 10퍼센트로 한다.

제3조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사무 처리상 필요한 인지대, 예납금(송달료, 법원의 납부명령에 따른 검증료, 감정료), 기록등사료, 출장여비 등을 지급한다.

(인지대, 예납금 환급계좌: ○○은행, 계좌번호 기재,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조 위임사무가 전부 승소일 때에는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승소보수금을 지급하고, 일부 승소일 때에는 보상금 증액을(판결금액/재결금액)이 3.5퍼센트 이하 (소수점 둘째자리이하를 버린다)인 경우에 한하여 승소보수금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소송업무규정을 따른다.

제5조 소송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환송심에 대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계약으로 갈음하며 환송심에 대한 착수금은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6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항 중 소의 취하, 반소의 제기,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상소권의 포기 등 중요한 소송행위를 할 때는 미리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소송대리인"은 소송수행 목적으로 "의뢰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유출방지 등 보호의무가 있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반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대리인"이 이 계약서 제8조 및 제9조,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와 붙임 서식의 청렴서약서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의뢰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대리인"은 소송중인 법원에 사임계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건이 승소(일부승소 포함)로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야 할 경우 즉시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 결정정본을 "의뢰인"에게 송부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뢰인"과 "소송대리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의뢰인"과 "소송대리인"은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의뢰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인)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주 소

(인)

붙임 서식 : 청렴서약서 1부(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규정 제4조 및 소송위임계약서 제10조 관련 <신설
2020. 7. 2., 2020. 11. 23.>

사건번호	
------	--

청 렬 서 약 서(소송대리인)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귀 공사와의 소송위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1. 귀 공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가.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나. 귀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수행

1) 귀 공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소송의 수임 또는 법률자문 수행 등

2) 귀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보조참가인을 위한 소송의 수임 또는 법률
자문의 수행 등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라. 미공개 정보이용

마. 기타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등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귀 공사의 관련 소송수행 직무를 회피합니다.

가.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나.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다.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라.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친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020. . .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청 령 서 약 서(법률고문 또는 자문변호사)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률고문(자문변호사)으로서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귀 공사와의 법률고문(자문변호사)에서 해촉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1. 귀 공사의 법률고문(자문변호사)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가.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나. 귀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수행

1) 귀 공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소송의 수임 또는 법률자문 수행 등

2) 귀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보조참가인을 위한 소송의 수임 또는 법률자문의 수행 등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라. 미공개 정보이용

마. 기타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등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귀 공사의 관련 소송수행 직무를 회피합니다.

가.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나.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다.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라.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친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020. . .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또는 자문변호사)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호의5서식] 제4조 관련 <신설 2021. 12. 9.>

소송대리인 수임 제안서

아래 법무법인(변호사)은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 수임을 제안합니다.

1. 법무법인(변호사)의 소개

2. 소송내용 및 수행계획

가. 소송내용

- (1) 사건의 개요
- (2) 이 사건의 쟁점
- (3) 유사사례(판례 등)

나. 소송수행 계획

- (1) 대응방안(변론진행 계획, 증거자료 확보방법 등)
- (2) 승소가능성

3. 담당변호사 소개

가. 전문분야

나. 학력 및 경력

다. 유사 소송수행 경험 등

4. 업무범위 및 소송비용

가. 업무범위

나. 소송비용

- (1) 착수금 :
- (2) 승소보수금 :

5. 기타 참고사항(소송수행사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호의6서식] 제19조의3 관련 <신설 2021. 12. 9.>

법률고문 지원서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위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지원자격 및 지원분야

가. 지원자격 : (1) 개인변호사, (2) 법무법인 중 택 1

※ (2)를 선택한 경우 전담변호사 1인 함께 기재

나. 지원분야 :

2. 자기 소개

가. 전문분야

나. 학력 및 경력

다. 최근 3년간 법률자문 경험 및 소송수행 실적

3. 업무수행 계획

* 소송/자문 및 기타 수행 가능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4. 기타 참고사항

* 법무법인 소속일 경우 전담변호사 외 지원 가능한 “담당변호사” 및 전문인력 기재
(담당변호사의 학력 및 경력, 전문분야 등 기재하여야 하며, 담당변호사에 대하여는
자문료와 소송수임료에 대하여 전담변호사와 동일한 기준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4조 관련)

(사건번호)

소 송 위 임 장

당사자 {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건에 대하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합니다.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상급심에 대한 상소제기 (6) 청구의 포기 및 인낙 (7) 복대리인의 선임 (8) 목적물의 수령 (9)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10) 담보권 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및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등

위 소송을 위임 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 ○ ○ (인)
주 소 :

지역본부장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을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위임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 ○ ○
위 대리인 ○○지역본부장 ○○○

소송심의위원회 소집통지서

수 신 :

“소송업무규정” 제26조에 따라 20 년 제〇〇회 소송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 :

○ 장 소 :

○ 의 안 :

불 임 소송심의위원회 심의의안 1부. 끝.

년 월 일

간사

(인)

[별지 제4호서식] (제26조 관련) <신설 2018. 12. 31.>

소송심의위원회 부의안

의안번호	제 20 - 호
의결일자	20 년 월 일 (제 회)

제 목	
-----	--

제 출 자	○○○○ 처장
제 출 일 자	20 년 월 일

의 결 사 항

- 1. 제안요지
- 2. 제안사유
- 3. 주요골자
- 4. 참고사항

붙임 :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등

20 년도 제 회 소송심의위원회 심 의 의 결 서

1. 의결주문

20 년도 제 회 소송심위원회 부의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2. 의결내용

3. 심의위원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붙 임 : 소송심의위원회 의사록 1부. 끝.

간 사

[붙임]

소송심의위원회 의사록

(의안 제20 - 00호)

1. 일 시 :

2. 장 소 :

3. 건명 및 위원

○ 건 명 :

○ 위원장 :

위 원 :

간 사 :

4. 주요 심의내용

5. 의결결과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장